

2020.1.15.~1.17. / 3일간

# 제3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## 심 사 결 과

| 의 안 명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       | 원안가결 |

## 주요내용

### 1.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0. 1. 10.
- 제안자 : 장성군수(총무과)
- 제안이유
  - 군민의식 개혁을 선도하는 국민정신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- 주요내용
  - 목적,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    - 바르게살기운동 정신 계승·발전, 건강한 사회건설 이바지
  - 보조금의 지원(안 제3조)
    - 정신의 계승·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
    -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
    -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에 필요한 경비
    - 그밖에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
  - 보조금 신청 및 정산, 보조금의 신청절차(안 제4조 ~ 안 제5조)
    -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과 절차, 「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 준용
  - 지역사회 발전기여 유공 포상(안 제6조)
    -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## 2. 장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20. 1. 7.
- 발 의 자 : 임동섭 의원 · 고재진 의원

## ■ 제안이유

- 학령기 동안 성차별, 빈곤, 장애,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비문해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

## ■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-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사업의 공동추진, 경비보조 및 지원,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(안 제6조 ~ 안 제9조)
- 포상에 관한 규정함(안 제10조)

## 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 3.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■ 제출일자 : 2020. 1. 10.

## ■ 제 안 자 : 장성군수(농업기술센터)

## ■ 제안이유

-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공익적,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

## ■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  - 공익수당의 목적,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
- 공익수당의 지급(안 제3조 ~ 안 제 10조)
  -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, 지급신청, 지급액 및 지급방법
  - 지급제외대상의 이의신청, 지급 중지 및 환수

-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1조 ~ 안 제17조)
  - 위원회 기능, 구성, 임기, 해촉, 회의
  - 읍·면 공익수당 위원회 운영
- 공익수당 수급자의 책무 및 의무이행(안 제18조 ~ 안 제19조)
  - 마을별 정례교육 및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기본의무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